

문 의	정보고객지원국	과 장 전현진	042-481-5460
	정보고객정책과	사무관 박성철	042-481-5716
 2018년 4월 6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4월 5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유지료 절반으로 줄어든다.

- 특허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4월 6일부터 시행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중소·벤처기업 등의 특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을 2018. 4. 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부담을 더 줄여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기술 혁신 활동을 위한 특허 수수료 지원 체계 >

[특허 창출 단계]			[특허 유지 단계]			
출원	→	심사청구	→	설정 등록(1~3년)	→	등록 유지(4년~20년)
(현행)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70% 감면				4~9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지원 확대)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추가 도입				4~20년차 연차등록료 50%감면

* (연차등록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 4년차부터 권리유지를 위해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등록료

1**중소·벤처기업 대상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도입**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창출활동으로 연간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 (특허 창출 활동 관련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인센티브 부여(안) >

납부금액	3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800만원 초과
인센티브 비율	10%	20%	30%	40%	50%

다만, 올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의 특허 창출활동 성과에 따라 내년('19년) 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 (관련 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및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2**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의 연차등록료는 절반만 납부하도록 하여,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 중소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특허등록 이후 9년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감면*받았으나,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개정으로 특허 등록 후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 (현행)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9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 (개정) 최초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20년차 연차등록료 50% 감면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이 특허 1건당 평균적으로 보유한 청구항(발명의 보호범위)수 6개 기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한 특허 창출활동과 핵심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된다.

< 중소기업의 4년차 이후 연차등록료 50%감면 도입시 등록료 납부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설정등록 후 연차 (매년)					합계	
	1~3년차	4~6년차	7~9년차	10~12년차	13~20년차	12년 유지	20년 유지
정상 납부금액 (6항기준)	9	17	33	57	69	349	901
현행 감면 후 납부금액(A) (감면율)	3 (70%)	12 (30%)	23 (30%)	57 (감면 없음)	69 (감면 없음)	284	836
감면 확대 (*18.4.6.시행)	현행	30% ~50%	30% ~50%	50%(신설)	50%(신설)	-	-
추가 감면 후 납부금액(B) (감면율)	3 (70%)	9 (50%)	16 (50%)	29 (50%)	35 (50%)	169	445
감면 효과 (=A-B)	현행	3↓	7↓	28↓	34↓	115↓	391↓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4년~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당초에는 올해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등의 도입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4년 더 연장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중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초 설정등록료와 등록 후 4~6년차 연차등록료를 70% 감면을 받는 효과가 있으며,

직무발명보상 우수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 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26만원*에서 435만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이 특허 1건당 평균적으로 보유한 청구항(발명의 보호범위)수 6개 기준

< 중소기업 중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특허 등록료 납부 금액 사례 >

(단위 : 만원)

구분	설정등록 후 연차 (매년)					합계	
	1~3년차	4~6년차	7~9년차	10~12년차	13~20년차	12년 유지	20년 유지
정상 납부금액 (6항기준)	9	17	33	57	69	349	901
현행 감면 후 납부금액(A) (감면율)	3 (70%)	9 (50%)	23 (30%)	57 (감면 없음)	69 (감면 없음)	274	826
중소기업 중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감면	현행	50%→70%	50%	50%	50%	-	-
		(중소기업의 연차등록료 50% 감면)					
감면 후 납부금액(B) (감면율)	3 (70%)	5 (70%)	16 (50%)	29 (50%)	35 (50%)	159	435
감면 효과 (=A-B)	현행	4↓	7↓	28↓	34↓	115↓	391↓

한편, 특허청에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경우 심사청구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수수료 등의 납부마감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인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전자적으로만 납부할 수 밖에 없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출원인의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수료 등의 납부마감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그 다음 근무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밖에, 상표권의 설정등록료나 갱신등록료를 분할 납부*한 경우, 2회차 등록료 납부일(설정등록일 또는 갱신등록일로부터 5년이내) 전에 상표권의 분할 내지는 분할 이전**을 한 경우 각각의 상표권별로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등록료 납부방법을 명확히 했다.

* '12년부터 상표 등록료는 2회로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상표법 제72조)

** 상표권자는 각 지정상품별로 상표권을 분할하거나, 각 지정상품별로 타인에게 양도(이전) 할 수 있음 (상표법 제93조 및 제94조)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붙임]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내용
2.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료 감면제도 현황

현 행	개정	비 고
① 중소기업 등*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4~9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 개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 중소기업 등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4~20년차 연차등록료 50% 감면 * 중견기업은 종전과 동일	◦ 중소기업의 특허 1건당 20년 유지비용 경감
② 특허 창출활동 우수자에 대한 수수료 인센티브 없음	◦ 특허 창출활동 우수자에게 수수료 인센티브 제공(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도입)	◦ 중소기업·개인 발명가의 특허 창출 활동 촉진
③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및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추가 20%감면 혜택 종료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추가 20%감면 혜택을 4년 연장	◦ 직무발명 보상 제도 및 지식재산 경영 확산 촉진
④ 국제출원 심사청구료 감면을 위해 특허청에서 작성한 국제조사 보고서 등 서면 첨부 필요	◦ 특허청에서 작성한 국제조사 보고서 등의 서면 제출 없이 DB를 이용하여 심사청구료 감면	◦ 출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 경감
⑤ 수수료 등 납부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기간 연장 근거 無	◦ 수수료 등 납부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다음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	◦ 수수료 등의 납부 편의 제공
⑥ 상표등록료 분할납부 후 분할(이전)시 2회차 납부방법 불명확	◦ 상표등록료 분할납부 후 분할(이전)시 2회차 등록료를 설정(갱신)등록일부터 5년내 납부	◦ 상표등록료 납부 방법 명확화

주) 감면요건과 관련된 사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등 참고

등록 후 납부기간		감면대상	감면비율
설정 등록료	1~3년차	중소기업, 개인	70%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50%
		중견기업	30%
연차 등록료	4~9년차	중소기업, 개인,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50%
		중견기업	30%
	10~20년차	중소기업, 개인,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50%

- 주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은 4~6년차 연차등록료 20%추가 감면
- 2) 감면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등 참고